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

서류제출 기한	2022년 8월 12일(금) ~ 8월 18일(목) 17시까지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방문 예약 신청 후 견본주택 방문접수
견본주택 위치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32번지 (대표번호 : ☎ 061-282-8004)
유의사항	- 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견본주택 방문 후,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상기 제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7.22(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전체)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기준	주요 확인 사항
	필수	해당			
공통	○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발급용에 한함, □ <b>본인서명사실확인서</b> 대체 가능(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 상 도장 대조, <b>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b>
	○		신분증 사본	본인	- 주민등록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 연속 90일 초과 / 연 183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b>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b>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복부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기타지역 청약 시 복무기간 확인
	○		국방부 추천명단	본인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해당지역 청약 시 추천명단 확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순위, 가입기간, 예치금 확인 / 인터넷 청약 시 생략	
해외체류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단신부임)	본인	- 국내기업 소속(건강보험,재직증명서,출장명령서)/해외기업 소속(현지 발급서류,번역공증)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단신부임)	세대원	- 등분상 세대원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미성년 자녀 모두 제출
	○		여권, 비자 발급내역 등	세대원	- 신청자의 해외체류기간 내 세대원 해외체류 시 동일 국가 체류여부 추가 확인
신혼부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검증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기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원	- 신청자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		소득증빙서류	본인	- <b>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입증자료(신청자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b>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자산 3.31억원 초과 여부 확인,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배우자 전혼자녀 부양가족 신청 시(신청자 본인 등분 등제 한함)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전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외 불가) 제출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 추가서류	○		위임장	본인	- 견본주택 비치(청약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확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본인발급용 확인(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b>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b>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본인 확인
	○		대리인 도장	대리인	- 서명가능
주택관련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자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해당자	-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해당자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자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았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구분	우선공급 (50%)	외별이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맞별이	120% 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일반공급 (20%)	외별이	100% 초과~140% 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맞별이	120% 초과~160% 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소득초과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외별이	140% 초과 부동산가액 3.31억 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맞별이	160% 초과 부동산가액 3.31억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년)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중인 경우 태아 수를 포함)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 자산보유기준(소득기준 초과자)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 colspan="2">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td> </tr>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 상기 제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7.22(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전체)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 해당직장 및 해당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에는 『직인날인』이며 제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발급의 경우 제외)
- ※ 상기 서류 및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 ■ 신혼부부 소득입증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 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날인)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국민연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사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또는 당해회사 급여명세표(직인날인)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접수장소	